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89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OOOO
임직원	대표이사, 前담당임원
외부감사인	□□공인회계사감사반, ◆◆회계법인, ■■공인회계사감사반

2. 조치내용

○ ㈜OOOO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감사인지정 3년
-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(○○○)
- 해임권고 상당(●●●)

○ 대표이사 ○○○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前담당임원 ●●●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□□공인회계사감사반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
○ 공인회계사 ☆☆☆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
○ 공인회계사 ★★★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4시간

○ 공인회계사 ◇◇◇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4시간

○ ◆◆회계법인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
○ ■■공인회계사감사반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
○ 공인회계사 ◎◎◎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8시간

○ 공인회계사 ◉◉◉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㈜OOOO >

○ **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**

- 회사는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외부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인식 후 이를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, 매출채권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(과소)계상함

< □□공인회계사감사반 >

○ **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< ◆◆회계법인 >

○ **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< ■■공인회계사감사반 >

○ **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